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0. 12 선고 2017가단329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전 문

원 고 A

특별대리인 B

피 고 C

변론 종결 2018. 9. 21.

판결 선고 2018.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3. 16. 접수 제152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6.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4.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3. 16. 접수 제152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치매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법무사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여 법무사와 면담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다룬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특히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3. 12.경 진주 D병원에서 치매(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로 진단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이 사건 증여 당시 만 86세의 고령이었던 점, ②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근접한 2017. 5.4. 작성된 D병원의 진단서(갑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원고는 '치매에 수반된 인지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많은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며 사고에 노출될 우려도 있어 24시간항상 보호자나 간병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③ 원고에 대하여 2017. 10. 18. 임상심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원고의 지능은 경도 지적장애 수준으로 적어도 IQ90 이상으로 추정되는 병전 지능에 비해서 저하되어 있었고, 전반적인신경인지영역, 일상생활기능의 저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④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감정의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충분히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정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후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들 중 피고에게만 증여하는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 즉 의사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을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주시 E면사무소, F 법무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신창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박정홍

